

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3478
결재일자	2016.3.22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04호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조혜란	이정희	이윤영	박기웅	03/22 이비오
협조				

2016년 예산성과금 운영 계획

2016. 3.



성 동 구

(기획예산과)

2016년 예산성과금 운영 계획

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, 일하는 방식 개선 유도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효율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I 근거 및 추진방향

□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~ 제54조의2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 (행정자치부령)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

□ 추진방향

-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및 수입증대 방안 제고
-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사기진작
- 창의와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유도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

II 운영현황

□ 최근 5년간 운영 현황(세부내역 '붙임 4' 참고)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1		2012		2013		2014		2015	
	건	금 액	건	금 액	건	금 액	건	금 액	건	금 액
총 지급액	13	20,000	11	20,000	19	20,000	17	19,600	25	20,000
성 과 금	2	4,000	4	14,000	4	9,500	4	7,900	6	10,600
격 려 금	11	18,000	7	6,000	15	10,500	13	11,700	19	9,400

Ⅲ

심사대상 및 지급기준

□ 심사대상: 2015회계연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업

- (지출절약) 정원감축,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업무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세출예산을 절약한 경우
- (수입증대)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
- 예산낭비 신고 및 지출절약·수입증대에 관한 제안

□ 지급대상(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)

-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또는 최소단위 조직
- 성동구 사무를 위임·위탁 받아 수행한 기관의 임·직원
-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

□ 지급기준(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, 제13조, 제16조)

구 분		지 출 절 약			수입증대
		인건비 절약 (인력운영비)	경상적 경비 (기본경비)	주요사업비	
성 과 금	지급 기준	감축된 인건비의 1년분 이내	절약액의 50% 이내	절약된 경비의 10%이내	증대액의 10% 이내
	지급 한도	1인당 10,000천원 (기여자가 다수인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)			
	가산 지급	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30% 범위 내 가산 지급 가능 (1인당 13,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)			-
격 려 금		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 절약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 지급 가능			
중복지급 제 외		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. (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제4항)			

□ 예 산 액: 20,000천 원

□ **소요예산: 20,210천 원**

- 포상금(예산성과금): 20,000천 원
 - 기획,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,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, 예산성과금 운영, 포상금, 포상금(303-01)
- 사무관리비(위촉 위원 수당): 210천 원(70,000원*3명)
 - 기획,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,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, 예산 성과금 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(201-01)

□ **추진 일정**

- 성과금 신청(각 부서→자체심사위원회) 3. 24.(목)
-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과 제출(국·기관→기획예산과)
 - 3. 29.(화)
-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4. 26.(화)
- 예산성과금 지급(예정) 4. 29.(금)

□ **사후조치**

-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반영
- 성과금 지급 후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를 각 부서에 전파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

- 붙임 1.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.
 2.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1부.
 3. 자체심사위원회 의결서 양식 1부.
 4. 2011~2015년 예산성과금 지급 목록(참고용) 1부.
 5. 예산성과금 지급 및 제외 대상(관련법규) 1부. 끝.